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7.3.8.] [대통령령 제27932호, 2017.3.8., 일부개정]



【제정 · 개정이유】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둘 이상의 지역에서 가축분뇨수집 · 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 · 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허가 대상 지역에서만 사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가축분뇨수집 · 운반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수집 · 운반업의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【제정 · 개정문】

◎ 대통령령 제27932호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비고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· 시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서 가축분뇨수집 · 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 · 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 · 시 · 군 · 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